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주민대표(이성자)의 위원직 사임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주민대표)에 대하여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동의 요구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임기
위원	이선호	여	48. 2. 26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2-1	2006.2.24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동의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삼정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제388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4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주민대표(이성자)의 위원직 사임**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주민대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동의 요구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임기
위원	이선호	여	48. 2. 26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2-1	2006.2.24

□ 참고사항(관계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 관계법규 조문

法	施 行 令																
<p>第17條【周邊影響地域の 결정·告示】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을 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住民支援協議體(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專門研究機關으로 하여금 環境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收斂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周邊地域の 環境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관련)</p> <p>1. 지원협의체의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폐 기 물 매 립 시 설</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폐 기 물 소 각 시 설</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성면적</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처리규모</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제곱미터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1인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처리능력 300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인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처리능력 300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1인</td> </tr> </tbody> </table> <p>2. 지원협의체의 위원</p> <p>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p> <p>비 고 :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p>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15인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	11인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15인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	11인														

2.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 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 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으로 한다.